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2.

발 의 자: 황보승희·허은아·유경준

김기현・최승재・이태규

박성중ㆍ이종배ㆍ김예지

조수진 • 백종헌 • 박덕흠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,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"자치구의 구청장"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제1항 중 "시장이나 군수는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	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
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	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
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	
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	
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「택시	
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	
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	
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	
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	
을 지원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